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63호 2022. 10. 7(금)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남원시의회 훈령 제1호 남원시의회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1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2-128호 남원 도시관리계획(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2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947호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공고문----- 4
- 남원시 공고 제2022-1964호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3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 훈령 제1호

남원시의회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남원시의회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6급(상당) 이하 일반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외직명) ① 제2조에 따른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활용·관리) ① 의장은 대외직명을 소속기관 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고시 제2022-128호

남원 도시관리계획(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로 결정 고시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결정 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07일

남 원 시 장

1. 남원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04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역사공원	금지면 옹정리 301-3번지 일원	31,760	-	31,760	전라북도고시 제2011-14호 (2011.01.14)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시설구분	시설면적(m ²)			구성비(%)	건축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1,760	-	31,760	100.0	465	감)25	440	465	감)25	440	건폐율 1.4%
도로	2,481	증)204	2,685	8.5	-	-	-	-	-	-	
조경시설	17,726	증)4,602	22,328	70.3	-	-	-	-	-	-	
휴양시설	5,460	감)4,040	1,420	4.6	-	증)75	75	-	증)75	75	건폐율 0.2%
교양시설	2,742	증)1	2,743	8.6	340	-	340	340	-	340	건폐율 1.1%
편익시설	3,251	감)695	2,556	8.0	25	-	25	25	-	25	건폐율 0.1%
기타	100	감)72	28	0.1	100	감)100	-	100	감)100	-	

3. 공원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m ²)			구성비 (%)	건축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1,760	-	31,760	100.0	465	감)25	440	465	감)25	440	건폐율 1.4%
도로	소 계				2,481	증)204	2,685	8.5	-	-	-	-	-	-	
	1-1	-	보행자도로	-	251	감)251	-	-	-	-	-	-	-	-	
	1-2	1-1	산책로	산책로	1,932	감)772	1,160	3.7	-	-	-	-	-	-	3개 노선
	1-3	1-2	가감속차로	도로	298	증)1,227	1,525	4.8	-	-	-	-	-	-	
조경 시설	소 계				17,726	증)4,602	22,328	70.3	-	-	-	-	-	-	
	2-1	2-1	녹 지	녹 지	17,726	증)4,602	22,328	70.3	-	-	-	-	-	-	
휴양 시설	소 계				5,460	감)4,040	1,420	4.5	-	증)75	75	-	증)75	75	건폐율 0.2%
	3-1	3-1	광 장	광 장	5,460	감)4,890	570	1.8	-	-	-	-	-	-	1개소
	-	3-2	-	휴게정자	-	증)335	335	1.1	-	-	-	-	-	-	2개소
	-	3-3	-	다목적그늘막	-	증)515	515	1.6	-	증)75	75	-	증)75	75	신설 1개소
교양 시설	소 계				2,742	증)1	2,743	8.6	340	-	340	340	-	340	건폐율 1.1%
	4-1	4-1	추모각	추모각	325	증)105	430	1.4	130	증)210	340	130	증)210	340	2개소
	4-2	4-2	묘 역	묘 역	1,852	증)461	2,313	7.3	-	-	-	-	-	-	
	4-3	-	전시및수양관	-	465	감)465	-	-	210	감)210	-	210	감)210	-	
	4-4	-	성덕비	-	100	감)100	-	-	-	-	-	-	-	-	
편의 시설	소 계				3,251	감)695	2,556	8.0	25	-	25	25	-	25	건폐율 0.1%
	5-1	5-1	주차장	주차장	2,421	증)99	2,520	7.9	-	-	-	-	-	-	대형6면 소형48면
	5-2	5-2	화장실	화장실	80	감)44	36	0.1	25	-	25	25	-	25	1개소
	5-3	-	휴게정자	-	190	감)190	-	-	-	-	-	-	-	-	
	5-4	-	그늘시렁	-	560	감)560	-	-	-	-	-	-	-	-	
기타	소 계				100	감)72	28	0.1	100	감)100	-	100	감)100	-	
	6-1	6-1	오수정화조	오수정화조	100	감)72	28	0.1	100	감)100	-	100	감)100	-	1개소

4. 남원 도시관리계획(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도 : 실음생략

남원시 공고 제2022-1947호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공고문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남 원 시 장

1. 제정이유

- 남원시 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2조)
- 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다.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 규정 (안 제4조)
- 라. 사무의 관리·위탁 및 예산지원 (안 제5조 ~ 안 제6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5. ~ 2022. 10. 24.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환경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09),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 : 불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9.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환 경 과 장

1. 제정이유

남원시 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2조)
- 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다.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 규정 (안 제4조)
- 라. 사무의 관리·위탁 및 예산지원 (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5. ~ 2022. 10. 24. (20일간)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지”란 남원시에서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 제3조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 등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생태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 운영·관리의 위탁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4., 2012. 2. 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6. 10.>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2.>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남원시 공고 제 2022 - 1964호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제안을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 나.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기능 사항 규정 (안 제3조~안 제4조)
- 다.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라. 간사, 의견청취, 지원사항, 수당 등 규정 (안 제6조~안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6. ~ 2022. 10. 26.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시민소통실 지역공동체담당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마감일 소인 유효), 이메일(ohyt862@korea.kr)
- ※ 기타 문의전화(시민소통실 063-620-6816)

5.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붙임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행정을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남원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시민소통위원”이란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으로 시정에 대한 자문과 의견 등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소통위원회의 구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행정을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하고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남원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2.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시장이 소통행정·열린 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논의
제5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별
위원은 7명 이내로 한다.

1. 문화관광 분과

2. 안전복지 분과

3. 경제활성화 분과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분과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
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